

신청서 제출시 참고사항

1.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, 소재지 또는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2.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닐 때에는 신청할 권리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예:호적등본)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3.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4. 신청서 기재란 중 지면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5. 신청서에는 아래표에 해당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 등본(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등본)을 첨부하여 주시고, 배상심의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추가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위의 서류 이외에도 손해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·도면·사진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.

배상종류	배 상 내 용	첨 부 서 류
요양비	공무원의 직무집행중 불법행위 또는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하여 부상하거나 또는 병에 걸렸을 때 그 요양비용을 청구하는 것	(1)요양비의 내용을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(2)요양 및 이를 가료할 비용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
휴업배상	요양으로 인하여 월수입액에 손실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	월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(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의 월수입액증명서 또는 구청장·시장·군수와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월수입액 증명서)
장해배상	치료를 완료한 후의 신체의 장애로 노동력의 감소 또는 상실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	(1)신체장애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(2)월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
유족배상 및 장례비	피해자가 생명을 잃었을 때 청구하는 것	(1)사망진단서 (2)호적등본 (3)월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
부동산 및 동산손해 배상	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손해를 입었을 때 청구하는 것	(1)부동산(선박) 등기부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 (2)수리견적내역서 또는 수리인영수증과 그 내역서
기타배상	상기 이외의 손해를 입었을 때 청구하는 것	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